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추가〉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13호)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16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추가(성일종의원안)	3
2.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김병주의원안)	8
※ 참고자료:	
1.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 관련 규정	12
2.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제도 개요	14

I. 제안경위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 1)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5. 8. 6.
- 3) 회 부 일 : 2025. 8. 7.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 2) 발의연월일 : 2025. 8. 6.
- 3) 회 부 일 : 2025.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추가(성일종의원안)

□ 개정안은 정당원이나 선출직 공무원 이력이 있는 사람을 국회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④ (생략) <u><신설></u>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u> 1. <u>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2. <u>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생략)	

□ 「방위사업법」 제9조¹⁾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국방부장관)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은 국방부차관, 국방부 등 각 기관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임.

-
- 1) 「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사항
 7. 제23조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제26조및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와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방과학연구소장,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
 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구성 중 국방부차관 등 대부분은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의 장이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한 사람은 주로 민간인이 추천되고 있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방위사업법」 제9조)]

- 당연직: 18명
 - 국방부 장관·차관, 전력정책국장
 - 방위사업청장·차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직무대리
 -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국회 추천: 4명
- 방위사업청장 추천: 2명

□ 국회 상임위원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및 그 위촉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의 위원 추천요청,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위사업청장의 위촉건의, 국방부장관의 위원임명 순서로 이루어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절차]

[국회 상임위 추천 위원]

- ① 신규위원 추천요청(방사청 → 국회(국방위))
- ② 신규위원 추천(국회(국방위) → 방사청)
- ③ 신규위원 위촉 건의(방사청→국방부)

[방위사업청장 추천 위원]

- ① 신규위원 추천요청(방사청 → 관련기관 등)
- ② 신규위원 추천(관련기관 등 → 방사청)
- ③ 신규위원 위촉 건의(방사청→국방부)

*자료: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보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약이 없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 국가기관에 중개하는 정당의 역할이 있으므로 당적 이력 등을 일률적으로 민간위

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8개 위원회(공급망안정화기금운영심의회 등) 모두 정당 이력 등의 사유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²⁾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에 관한 내용은 국회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 및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 의견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개요]

가. 의무 개최 횟수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함.
-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³⁾: 매월 2회(2주, 4주 목요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음.

나. 활동횟수(2023년부터 2025년 10월 말)

-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22회(제149회 ~ 제171회)
- (2)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57회(제75회 ~ 제131회)

다. 참석인원

-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당 15 ~ 20명
- (2)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 회당 15 ~ 24명

*자료: 방위사업청

2) 참고자료: 2.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 관련 규정

3)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분과위원회))

2.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김병주의원안)

- ☐ 개정안은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경우에 해당 업체의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생략)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u>7일</u>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 ----- <u>30일</u> ----- ----- -----.

- ☐ 현행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르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⁴⁾⁵⁾

4)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⁶⁾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최종사용자증명서를 발급 받는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됨에 따라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방위산업체의 민원 등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기한을 현실화하여 방산물자 등 수출업체가 법정의 기한내에 현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참고자료: 3.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제도 개요

- 6)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⑦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8조제7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출(수입) 신고필증 1부
-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증명서 1부
- 4. 법 제57조제2항 본문 및 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별지 제19호서식의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상의 수입자 또는 최종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계약서 등 서류

수출거래 현황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방산물자등 수출허가 면제 제도를 통해 신속한 물품 제공이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신, 수출허가 면제를 받고 수출한 방산물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출허가 면제정책 수립 등에 관련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7일 이내의 단기로 신고를 강제할 특별한 실익이 없음.

더욱이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황신고 대상은 이미 수출거래 허가 면제를 받은 방산물자 등으로 그 현황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더라도 방산물자 국외 유출 위험을 초래하거나 행정상 불편을 가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 국방부도 수출거래 현황의 제출기한을 현실화하여 방위산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함.

[최근 5년간 방산물자 수출허가 면제 및 수출현황 신고 건수]

연 도	건 수
2021년	33
2022년	16
2023년	9
2024년	6
2025년(~8월)	21
합 계	85

*자료: 방위사업청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1.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 관련 규정

위원회(법률)	조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3조)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전력망위원회(「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9조)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재해, 환경·해양환경 (중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조)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대체역 심사위원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중략)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위원회(법률)	조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기간산업안정기금운 용심의회(「한국산업 은행법」 제29조의6)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2.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제도 개요

□ 개요

국제 평화, 국가 안보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준수를 위해 방산물자나 국방 과학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때 정부의 사전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제도의 목적

- (국가안보 보장) 군사적으로 민감한 무기체계나 관련 기술이 적성국 또는 불안정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 (국제수출통제체제 이행) : 무기거래조약(ATT),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의 수출통제 의무 이행
- (방산수출의 합리적 관리와 진흥)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제 신뢰 확보

□ 수출허가 대상

- 방산물자
 - 군수품 중에서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지정된 물자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
- 국방과학기술
 -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수품의 개발·제조·시험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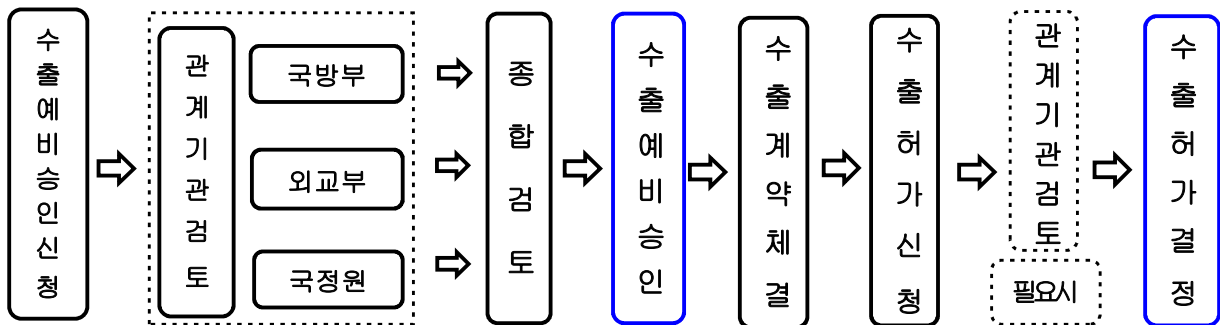
□ 수출허가 신청

-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수출허가, 견본수출허가 및 수출예비승인으로 구분되며, 수출 신청 자격을 수출·중개업신고증을 발급 받은 자로 제한

허가종류	수출허가		수출예비승인	수출업·중개업신고
	개별	건별		
신청자격	수출업·중개업 신고자	수출업·중개업 신고자	수출업·중개업 신고자	누구나
수출품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방산물자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신청기준	계약 건별	계약 건별	계약 건별	-
허가 유효기간	1년	1년	1년	2년

○ 수출허가 절차

- 주요방산물자



- 국방과학기술

